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1. 8.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요건) 내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자격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치료비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심사·심의를 명칭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 나.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추가(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2, 안 별표4~별표7)
 -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다. 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마.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4조~제31조, 안 별표10~별표12)

1) 시험 실시주기 및 운영 방법

※ 매년 1회 이상 실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 관련 검토

2) 시험 응시 자격요건

3) 시험 실시 절차 및 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선택형 필기) 및 2차(서술형 필기) 시험으로 진행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4) 교육·훈련

※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 실시

5) 부적합 자격 취득·활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의 제재조치 부과

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에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

사.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8, 안 별표13)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사항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한다.

이 때, 같은 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기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 하여금”을 “가”로 한다.

6.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제1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때에는 치료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된 기준(이하 “치료비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치료비지원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치료비 신청 방법

2. 치료비 지원 심의·의결 방법 및 절차

제20조제3항 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전문가에게 연구실을 심사하도록 하고 인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심사위원회”를 “인증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 심사”를 “인증 심사 및 심의”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연구실안전관리사”로 한다.

제6장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7장제32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7조의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종전의 제24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교육·훈련 등 그 관리에 관한 업무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35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험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2.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2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4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35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별표 4 제2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과 비교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일반기계기사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5.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3.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3.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과 비교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나. 일반기계기사
다.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라.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3.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4.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3.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목의 자격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3)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가스기술사
3)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3)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4)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7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목의 자격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3) 기계안전기술사
4)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3) 전기안전기술사
4)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3) 화공안전기술사
4) 화공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화공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가스기술사
3)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3) 산업위생관리기술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별표 8 제1호다목 중 “나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0)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0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500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6호, 제24조부터 제33조,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 별표 10부터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이하 같다.)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안전관리 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 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안전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안전관련 업무를 4년 이상(단, 7급 이상은 3년, 5급 이상은 2년) 수행한 사람
12. 안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및 범위(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령 -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생물(LMO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휴먼에러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2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연구실안전관리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자격취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생략)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략)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이 때, 같은 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기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동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

현행	개정안
인력 ~~으로~~ 하 ~~여~~ 급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 2. (생략) ⑧ (생략)	인력에게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 ~~여~~ 급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로 하 ~~여~~ 급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 ④ (생략)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략) <신설>	과 같음) ⑤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때에는 치료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된 기준(이하 “치료비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치료비지원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비 신청 방법 2. 치료비 지원 심의·의결 방법 및 절차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실을 심사하도록 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현행	개정안
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 ⑧ (생략)	에 따라 인증 심사 및 심의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7조의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제26조(시험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현행	개정안
	2.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u>교육·훈련</u>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 <u>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u>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u>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u>
<신 설>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 <u>행정처분 기준</u>)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u>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u>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신 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u>자격시험의 시행,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교육·훈련 등 그 관리에 관한 업무</u>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u>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과</u>
② (생략) <신 설>	

현행	개정안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u> 1.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u>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u>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u>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4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34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10</u> 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13</u> 과 같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6호, 제24조부터 제33조,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 별표 10부터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현행

개정안

<신 설>

1. ~ 7. (생 략)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8. (현행 제1호 ~ 제7호와 같음)

[별표 4]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 (생 략)
-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점검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 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6 (생 략)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잡자력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5 (생 략)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 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 략)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밝기 측정 기)

비고: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 (현행과 같음)
-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점검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 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 리사 자격을 취득 하고 직무 교육·훈 련을 이수한 사람 2. ~ 7. (현행 제1호 ~ 제6호와 같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잡자력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 리사 자격을 취득 하고 직무 교육·훈 련을 이수한 사람 2. ~ 6. (현행 제1호 ~ 제5호와 같음)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 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 리사 자격을 취득 하고 직무 교육·훈 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제1호 ~ 제4호와 같음)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밝기 측정 기)

비고

-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 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진단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 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략)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략)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밝기 측정기)

비고: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진단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 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제1호 ~ 제4호와 같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제1호 ~ 제4호와 같음)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제1호 ~ 제3호와 같음)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밝기 측정기)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 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6]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춘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6]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춘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신 설>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table border="1"> <tr> <th>분야</th><th>자격 요건</th></tr> <tr> <td>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td></tr> <tr> <td>소방</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td></tr> <tr> <td>가스</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td></tr> <tr> <td>산업위생 및 생물</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략)</td></tr> </table> 2. 장비: (생략)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u>안전 업무 경력</u>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table border="1"> <tr> <th>분야</th><th>자격 요건</th></tr> <tr> <td>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td></tr> <tr> <td>소방</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td></tr> <tr> <td>가스</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td></tr> <tr> <td>산업위생 및 생물</td><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td></tr> </table> 2. 장비: (현행과 같음)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3) (생략)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 4) (생략)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																				
[별표 7]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춘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 2) (생략) <신 설>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7]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춘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u>안전 업무 경력</u>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현

행

개

정

안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2) (생 략)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3) (생 략)
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4) (생 략)
화공 및 위험물 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4) (생 략)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3) (생 략)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3) (생 략)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1) ~ 4) (생 략)

2. 장비: (생 략)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3) (현행 1) ~ 2)와 같음)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
화공 및 위험물 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4) (현행 1) ~ 3)과 같음)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 5) (현행 1) ~ 4)와 같음)

2. 장비: (현행과 같음)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현행	개정안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후단 신설> 라.~사. (생 략) 2. 개별기준 (생 략)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사.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10]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이하 같다.)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안전관리 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 또는 안전관리 유사분야 기능 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4. 안전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 자 또 는 졸업예정자 5. 안전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현행	개정안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안전관련 업무를 4년 이상(단, 7급 이상은 3년, 5급 이상은 2년) 수행한 사람 12. 안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신 설>	[별표 11]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및 범위(제26조제3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시험과목</th><th>시험범위</th></tr><tr><td rowspan="5">제1차 시험</td><td>연구실 안전관련 법령</td><td>-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령</td></tr><tr><td>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td><td>-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td></tr><tr><td>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td><td>-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td></tr><tr><td>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td><td>-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td></tr><tr><td>연구실 생물 안전관리</td><td>- 생물(LMO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td></tr></table>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생물(LMO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유관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생물(LMO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현행	개정안												
	<table><tr><td></td><td></td><td>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td></tr><tr><td></td><td>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td><td>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td></tr><tr><td></td><td>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td><td>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휴면예러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td></tr><tr><td>제2차 시험</td><td>연구실 안전관리 실무</td><td>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td></tr></table>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휴면예러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제2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휴면예러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제2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별표 12] 연구실안전관리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현

행

개정안

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	법 제38조	자격정지	자격취소	

현행	개정안																									
	<table> <tr> <td>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td><td>제1항 제2호</td><td>1년</td><td></td><td></td></tr> <tr> <td>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td><td>법 제38조 제1항 제3호</td><td>자격정지 3개월</td><td>자격정지 6개월</td><td>자격정지 12개월</td></tr> <tr> <td>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td><td>법 제38조 제1항 제4호</td><td>자격취소</td><td></td><td></td></tr> <tr> <td>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td><td>법 제38조 제1항 제5호</td><td>자격정지 1년</td><td>자격취소</td><td></td></tr> <tr> <td>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td><td>법 제38조 제1항 제6호</td><td>자격취소</td><td></td><td></td></tr> </table>	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	제1항 제2호	1년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자격취소		
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	제1항 제2호	1년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자격취소																								

[별표 10]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후단 신설> 다.~라. (생략)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라. (현행과 같음)

